

2019년도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19.(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분과위원장 대행),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24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보호원장이 '접속차단 된 해외사이트를 대체하는 해외사이트 URL에 대한 구글 검색차단'에 관해 요청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113건(안건번호 제2019-149139호~15132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49139호는 ‘아프리카TV’ VOD 서비스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전송 중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19-149140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블로그에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49141호, 제2019-14914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어문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49143호는 회원 가입 및 승급 절차가 요구되는 네이버 카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민원인 신고)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7,09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보호원장이 '접속차단 된 해외사이트를 대체하는 해외사이트 URL에 대한 구글 검색차단 요청'에 관해 요청한 심의
 - 주요내용: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1항을 근거로 보호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대체하는 15개 해외사이트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관하여 보호원이 '구글'에 대해 검색차단 조치를 요구할 타당성 및 필요성 심의
 - 회의결과: 15개 대체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전송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원이 '구글'에 대하여 15개 대체사이트 URL에 관한 검색차단 요청을 할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58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4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4쪽의 사이트명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이트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19-149139호~151322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7,113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49139호는 민원인(실명)이 신고한 건임. ‘아프리카TV’ VOD 서비스 이용자가 ‘Angela Bright’의 유튜브 영상, ‘콘서트7080’, 가수 ‘마돈나’ 공연 영상 등을 전송한 사안임.

해당 안전은 웹캐스팅은 아니고 VOD 서비스임. 즉 수신의 이시성을 개념적 징표로 하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본 건 게시자는 약 3시간 34분 분량의 영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Angela Bright’의 눈 화장 사진, 2분 분량의 KBS ‘콘서트7080’ 영상물(가수 현진영이 노래하는 부분), 가수 ‘마돈나’ 공연 영상 등을 이용하였음. ‘Angela Bright’의 눈 화장 사진의 경우 하단에 인스타그램 계정 (ANGELABRIGHT)이 표시되어 있어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 인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삭제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현재 비공개 상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음. 즉 전송 중단 되어 있음.

- A 위원 : 약 3시간 34분 분량의 해당 영상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

용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게시물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전문위원이 해당 영상물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C 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몇 분 사용되었는지 확인 가능함.
- A 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저작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영상물에서 'Angela Bright'의 눈 화장 사진, KBS '콘서트7080'에서 가수 현진영이 노래하는 부분, 가수 '마돈나' 공연 영상 등을 해설하는 내용이라면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공중을 유인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라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임.
민원인이 신고하면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한 자료가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판단 불능으로 보고하였음.
- A 위원 :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작권 제한사유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현재 전송이 중단되었다면 부결할 수도 있고 경고의 시정권고만 할 수도 있을 것임.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한지?
- B 위원 : 이미 삭제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판단 불능임. 3시간 34분 중에 눈 화장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수

현진영이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노래 한 곡의 전체를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 인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지만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캡처 화면을 보면 저작물이 차지하는 화면은 해당 영상물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않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현재 비공개 상태이므로 부결로 해도 될 것임.
- A 위원 : 영상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함. 눈 화장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현진영 노래가 당시에 어떠했다고 설명했을 수 있음. 그렇다면 인용에 해당할 수 있음.
- C 위원 : 아프리카TV와 VOD에 나오는 방송사 간에 이용 계약이 있을 수도 있음
- A 위원 : 본 건에서도 'in dubio pro auctore' 원칙을 적용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권자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부결하는 데는 이견은 없지만 향후 동일한 건이 반복되어 심의에 요청된다면 심의 일관성을 위해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음.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913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49140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민원인은 해당 블로

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다수 전송하면서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

(해당 블로그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9140호는 게시물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92화'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원피스 92화'는 2001. 12. 9. 방영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는 파워링크 광고 3건이 게시되어 있음.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4914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9140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이견 없음.
- C 위원 :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914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9141호, 제2019-149142호는 웹하드 사이트의 이용자가 어문저작물 '지박소년 하나코 군'을 판매한 사안임. '지박소년 하나코 군'은 2015. 1.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이며, 일본에서는 11권까지 출판되었고 국내에서는 10권까지 출판되었음. 해당 어문저작물은 권당 약 1,500원에 대여할 수 있고, 약 2,500원에 구매할 수도 있음.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49141호, 제2019-14914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어문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 C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9141호, 제2019-14914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9143호는 특정 네이버 카페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중인 일본 애니메이션 '페어리 테일'을 전부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임.
- C 위원 : 보호원이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승급한 후 심의대상 게시물을 조사하는 것은 합법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1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 민원인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URL을 제시하거나, 증거자료와 함께 카페를 특정하여 민원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보호원 직원이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불법복제물을 확인하고 있음.

- C 위원 : 카페 내 최고 등급만 접근 가능한 불법복제물이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음. 제한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하는데 최고 등급까지 올라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어려울 것임.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4914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 이견이 없음.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914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9144호~151322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게임 '아르마 3'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9880호는 2013. 9. 12.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으로, 정품은 약 36,000원에 판매 중이고 배급사는 에이치투인터랙티브임. 해당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임.

(영화 '앵그리 버드 2: 독수리 왕국의 침공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0391호는 2019. 8. 7. 개봉한 미국, 핀란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시리즈 영화임.

(영화 '캡티브 스테이트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0460호는 2019. 11. 14. 개봉한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최근 불법복제물로 자주 발견되고 있음.

(영화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0536호는 2019. 9. 25.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0. 21.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해당 영화는 최근 불법복제물로 다수 발견되고 있음.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0719호는 2019. 10. 2.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 '사임당'에서 2019. 11. 12.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위원회는 해당 밴드의 다른 게시물에 대해 수차례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해당 영화는 2019. 11. 12.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영화 '조커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0760호는 2019. 10. 2. 개봉한 미국, 캐나다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1. 6.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영화 '열두 번째 용의자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0894호는 2019. 10. 10.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 '사임당'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1. 1.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영화 '두번할까요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0910호는 2019. 10. 17.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 '사임당'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1. 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영화 '판소리 복서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50959호는 2019. 10. 9.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 '사임당'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0. 29.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게임 '그리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090호는 2018. 6. 27. 출시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으로, 정품은 약 43,000원에 판매 중이며 배급사는 코드마스터즈임.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49144호~15132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해당 안건들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며,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만화, 어문, 게임,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A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9144호~151322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9139호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19-149140호~15132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보호원장이 ‘접속차단 된 해외사이트를 대체하는 해외사이트 URL에 대한 구글 검색차단’에 관해 요청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9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 (보호원장이 ‘접속차단 된 해외사이트를 대체하는 해외사이트 URL에 대한 구글 검색차단’에 관해 요청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15개 대체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원이 ‘구글’에 대하여 대체사이트 URL에 관한 검색차단 요청을 할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26.

분과위원장 대행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